

# 기안용지

(전화: 731-6352)

분류기호 문서번호	도개 30320-27	시행상 특면취급	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, 10.5.3.1.	시 장	
수신처 보존기간		협조기관 법무담당관 심사관 행정과장 <b>김병환</b>	
시행일자	90. 12		
보조기관	도계획국장 <b>전철</b> 도개발국장 <b>박인</b> 택지개발계장 <b>나성우</b>		
기안책임자	나성우	문서통제	발
경유 수신 참조	각 안 참조	발신명의	
제목	서울 중계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		
제 1 안 : 내부결재			
1. 택개 1 (총) 1921 - 9898 (90. 12. 14) 호와 관련입니다			
2. 한국 토지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'90. 12. 10 건설부장관			
으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승인된 서울중계지구 택지개발사업에			
대하여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이 있어 택지개발 촉진법			
제 9조 및 동법시행령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			
실시계획기간 <sup>변경</sup> 승인하고 별안과 같이 시행코져 합니다.			
- 다 음 -			
○ 실시계획 기간 변경		3033	

1991. 12. 20  
 인공로관

· 기정 : 1986. 4. 1 - 1990. 12. 31

· 변경 : 1986. 4. 1 - 1991. 6. 30. 끝.

### 제 2 안

수신 :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

제목 : 서울중계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

1. 택개/총 1921-9898 (90.12.14) 호와 관련입니다.

2. 귀사가 위대호로 신청한 서울중계지구 택지개발사업

실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

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기간을 변경승인

하나 동 기간내에 반드시 사업이 완료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

하시게 바랍니다.

다 음

### 0. 실시계획 기간 변경

· 기정 : 1986. 4. 1 - 1990. 12. 31

· 변경 : 1986. 4. 1 - 1991. 6. 30. 끝.

### 제 3 안

수신 : 노원구청장

참조 : 도시정비과장.

제목: 갈보건

1. 택지 1 (총) 121-9898 (90. 12. 14) 호와 관련입니다

2.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으로부러 서울중계지구 택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등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승인 하였기 알려드립니다.

첨부: 서울중계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부, 등

제 4 안

수신: 공보관

발신: 과장

제목: 시보게제 의뢰

1.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이 시행중인 서울중계지구 택지개발 실시계획을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등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기간을 변경 승인하였기 시보

게제 의뢰 하오니 게제하여 주서 바랍니다.

가. 시보게제구분 : 고시

나. 시보게제건명 : 서울중계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등

다. 범죄근거 :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등법시행령

제8조 제6항

첨부 : 1. 관련 공문 1부

2. 보고서 2부. "붙임"

고시번호	90.12.18	제 369	호
담당자		담당관	
46	김영준	김	

고 시 문

46  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

서울중계지구 택지개발 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

서울 중계지구 택지개발 사업 실시계획을 택지개발 촉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1항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거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990. 12.

서울특별시장

다 음

실시계획 기간 변경

- 기 정 : 1986. 4. 1 - 1990. 12. 31
- 변 경 : 1986. 4. 1 - 1991. 6. 30. 끝.

1990. 12. 18. 인공대조원

**신코하는 주인의식 실천도국 조속된다**

한 국 토 지 개 발 공 사

(515-3071)

내개1(총)1921- 5818

1990. 12. 14.


수 신 서울특별시장

제 목 서울중계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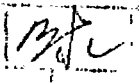

1. 택지30261-32722호('90.12.10)의 관련입니다.

2. 위호로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개발계획변경승인(사안기간 변경)된 서울중계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별첨과 같이 승인신청하오니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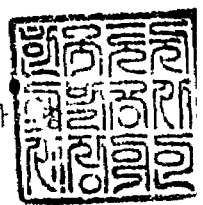
첨 부 1. 택지30261-32722호('90.12.10)공문사본 1부

2. 서울중계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(안) 1부. 끝 

1990. 12. 14

	기획재정	
12.14		
404		

한 국 토 지 개 발 공 사 사



사  
지방비서관

건 상 Y

택지 30261-2212

1990.12.10

수신 안국도시개발공사 사장

(10년)

제목 서울중계지구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

1. 택지1(총)1921-9468('90.12.3)의 관련입니다.

2. 귀사가 최대도로 신청한 서울중계지구 택지개발계획변경

승인신청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기관을  
변경 승인하여 동기관내에 반드시 사업이 완료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 
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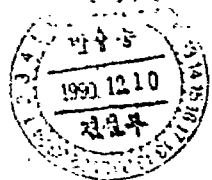
-다

당

0 개발기관 기갑변경

기간 : 1986.4.1 - 1990.12.31

변경 : 1986.4.1 - 1991. 6.30



관 설 부 장

택지개발과장 필봉



서울中溪地區 宅地開發事業 實施計劃 變更 (案)

1. 事業 名 : 서울中溪地區 宅地開發事業

2. 事業期間 變更 (案)

當 初 : 1986. 4. 1 - 1990. 12. 31

變 更 : 1986. 4. 1 - 1991. 6. 30

3. 延 期 事 由

1) 敷地造成工事 遲延

○ 支障物 撤去遲延 및 資材需給이 원활치 못하여 敷地造成工事

竣工遲延 (竣工豫定日 : '91. 2)

2) 地籍確定測量 遲延

○ 敷地造成工事 遲延에 따른 確定測量 順延 (竣工豫定日 : '91. 2)

3) 地自體 協議 및 認·許可 變更承認 期間 所要

○ 地籍確定測量結果 面積增減 및 其他 變更事項에 대한 地自體 協議

期間 및 認·許可 變更承認 期間 必要

- 開發計劃 變更承認 (建設部) : '91. 3. - '91. 4.

- 實施計劃 變更承認 (서울市) : '91. 5.

- 事 業 竣 工 : '91. 6.

添 附 : 豫定工程表 1部.



豫定工程表

(기정: —, 변경: ----)

區 分	事 業 量	比 率 (%)	期 間	'85		'86		'87		'88		'89		'90		91	
				1/4	3/4	1/4	3/4	1/4	3/4	1/4	3/4	1/4	3/4	1/4	3/4	1/4	3/4
		100.0															
1. 用地買入 및 補償	1,596,388㎡	57.0															
2. 調 査 設 計	1式	0.4															
3. 園 地 開 發		42.6 (100)															
가. 敷 地 造 成	1,596,388㎡	12.4															
나. 道 路 築 造 및 補 裝	1. 15,433m A: 311A	6.2															
다. 上 水 道	15,575m	2.2															
라. 下 水 道	37,371m	6.0															
마. 構 造 物 工	1式	42.2															
바. 電 氣 通 信	1式	6.8															
사. 造 景	1式	2.1															
아. 其 他 工 事	1式	19.6															
자. 地 籍 確 定 測 量	1式	0.6															
차. 附 帶 工	1式	1.9															